|  |  |  |
| --- | --- | --- |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관련****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통지**재관세[2012]14호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요원 사무실:<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09]55호) 규정에 따라, 그리고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문, 업계협회 및 관련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토대에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에 관련된 장비 및 제품목록, 수입 핵심부품과 원자재목록, 비 면세수입장비 및 제품목록 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산업목록(2012년 수정)>(첨부1 참조)와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 원자재상품 목록(2012년 수정)>(첨부2 참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첨부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첨부2에 열거된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한다.2. <면세불허 수입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2년 수정)>(첨부3 참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2년 4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받았으며 <수입설비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3]37호) 규정에 따라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하는 하기 프로젝트와 기업은 본 통지 첨부3에 열거된 자가용 설비,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관련제품, 예비부품은 일률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2) 외국정부 대출 및 국제금융조직의 대출 프로젝트(3) 외국투자자의 가격 미평가 설비를 수입한 가공무역기업(4)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5) <외국인투자 진일보 장려와 관련한 수입 세수정책에 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세[1999] 79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연구센터에서 자기보유 자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조 프로젝트.2012년 4월 1일전(4월 1일 불포함)에 비준을 받은 상술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2012년 9월 31일전에 본 통지의 첨부3에 열거한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재관세 [2012] 17호 문건 첨부3, 재관세 [2010] 50호 문건 첨부3, 재관세 [2011] 45호 문건 첨부3에 따라 집행한다. 2012년 10월 1일부터(10월 1일 포함) 상술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본 통지 첨부3에 열거한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일률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금을 징수한다.3. 2011년에 이미 면세자격을 취득한 제조기업, 도시레일교통 자주화 의탁프로젝트를 감당한 건설업자, 핵발전장비 자주화 의탁프로젝트 건설업자가 2012년 4월 1일전(4월 1일 불포함)에 수입신고를 한 핵심부품, 원자재는 계속하여 재관세 [2010] 17호, 재관세 [2010] 50호, 재관세 [2011] 45호 문건 및 첨부내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1년에 이미 면세자격을 취득한 기업 및 건설업자의 핵심부품, 원자재 수입신고는 본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4. 본 통지 첨부1에 열거한 장비와 제품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신규 신청하는 기업은 201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에는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치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요구는 여전히 재관세 [2009] 55호 문건에 첨부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상기 영역에 속하는 지방 기업의 신청자료에 대해 초기 심사를 진행하며 2012년 4월 15일전까지 신청서류 및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공업과 정보화부서에 보고해야 한다.2012년 4월 1일부터 신규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초기 심사 요구에 부합되었을 경우 기업은 서류 접수부문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의거하여 세관에 세금담보에 의한 관련 부품 및 원자재의 통관수속을 선행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5. 국내 관련 산업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본 통지 첨부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2년 수정)>은 풍력발전기(유닛) 및 부품(엽편, 기어박스, 발전기), 직류 송변전설비, 교류 송변전설비 등 3가지 장비의 기술규격에 대한 요구를 조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첨부1 참조)상기 풍력발전기(유닛) 및 부품 등 3가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 2011년에 이미 면세자격을 취득한 기업의 면세자격은 2012년 3월 31일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영역 내에서 2011년에 이미 면제자격 인정을 받은 기업이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우대 적용을 재신청하였을 경우에는 2012년 3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본 통지 제4조에서 규정한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본 통지의 제4조 요구에 따라 4월 15일전까지 초기심사 작업을 마쳐야 한다.6. 2011년에 이미 중대 기술장비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한 모든 기업은 2012년 3월1일부터 31일 사이에 재관세 [2009] 55호 문건에 첨부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의 관련 요구에 따라 우대정책을 적용한 실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 양식과 요구는 본 통지의 첨부4 <중대 기술장비기업의 수입 세수정책 적용 집행상황 보고 및 요구>를 참조한다. 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한 기업은 엄격히 요구에 따라 보고서와 관련 표를 작성해야 한다.7. 2012년 4월 1일부터 하기 문건은 폐지한다.(1)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잠행규정 관련 리스트 조정에 대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 [2010] 17호)(2)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장비 등 중대 기술장비 수입정책 조정에 대한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 [2010] 50호)(3) <제3세대 원전유닛 등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잠행규정 관련 리스트 조정에 대한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 [2011] 45호)첨부: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2012년 수정)2.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수입 핵심부품, 원자재 상품리스트(2012년 수정)3. 수입 면세불허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2012년 수정)4. 중대 기술장비기업의 수입 세수정책 적용 집행상황 보고 및 요구재정부공업과 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2012년 3월 7일첨부1~3:<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3/P020120312521597633422.pdf>첨부4: (생략) |  | **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2]1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按照《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09]55号）规定，根据国内相关产业发展情况，在广泛听取产业主管部门、行业协会及相关企业意见的基础上，经研究决定，对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装备和产品目录、进口关键零部件和原材料目录、进口不予免税的装备和产品目录等予以调整，现通知如下：　　一、《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2年修订）》（见附件1）和《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清单（2012年修订）》（见附件2）自2012年4月1日起执行，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本通知附件1所列装备或产品而确有必要进口本通知附件2所列商品，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 　　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2年修订）》（见附件3）自2012年4月1日起执行。对2012年4月1日以后批准的按照或比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下列项目和企业，进口本通知附件3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照章征收进口关税： 　　（一）国家鼓励发展的国内投资项目和外商投资项目； 　　（二）外国政府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目； （三）由外商提供不作价进口设备的加工贸易企业； 　　（四）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 　　（五）《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规定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投资设立的研究中心利用自有资金进行技术改造项目。 　　2012年4月1日前（不含4月1日）批准的上述项目和企业在2012年9月31日前进口本通知附件3所列设备，继续按照财关税[2010]17号文件附件3、财关税[2010]50号文件附件3、财关税[2011]45号文件附件3执行；自2012年10月1日起（含10月1日）对上述项目和企业进口本通知附件3中设备，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 　　三、2011年已获得免税资格的制造企业、承担城市轨道交通自主化依托项目业主、承担核电装备自主化依托项目业主，在2012年4月1日前（不含4月1日）申报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继续按照财关税[2010]17号、财关税[2010]50号、财关税[2011]45号文件及其附件有关规定执行；自2012年4月1日起，2011年已获得免税资格的企业及业主申报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按照本通知有关规定执行。 　　四、新申请享受本通知附件1所列装备和产品进口税收优惠政策的企业，应在2012年3月1日至3月31日提交申请文件，包括2012年4月1日至12月31日的进口零部件及原材料货值，具体申请程序和要求仍依据财关税[2009]55号文件所附《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暂行规定》执行。 　　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按照规定程序和要求对上述领域的地方企业申请材料进行初审，并在2012年4月15日前将申请文件及初审意见汇总上报工业和信息化部。 　　自2012年4月1日起，新申请企业提交的申请文件经初审符合要求的，企业凭受理部门出具的证明文件向海关申请凭税款担保先予办理有关零部件及原材料放行手续。 　　五、根据国内相关产业发展情况，本通知附件1《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2年修订）》对风力发电机（组）及其配套部件（叶片、齿轮箱、发电机）、直流输变电设备、交流输变电设备等3类装备的技术规格要求进行了调整（具体见附件1）。 　　生产上述风力发电机（组）及其配套部件等3类装备的企业，在2011年已获得符合免税资格的，原免税资格在2012年3月31日之前有效；上述领域在2011年已认定符合免税资格的企业继续申请享受2012年4月1日至12月31日期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优惠政策的，应在2012年3月1日至31日按照本通知第四条规定的申请程序和要求提交申请文件。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会同有关部门比照本通知第四条要求在4月15日前完成初审工作。 　　六、2011年已享受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优惠政策的所有企业，应在2012年3月1日至31日按照财关税[2009]55号文件所附《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暂行规定》有关要求报送享受优惠政策落实情况报告。具体格式及要求见本通知附件4《重大技术装备企业享受进口税收政策落实情况报告及其要求》，申请享受政策的企业应严格按照要求填写该报告及有关表格。 　　七、自2012年4月1日起，下列文件废止： 　　1、《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暂行规定有关清单的通知》（财关税[2010]17号）； 　　2、《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大型环保及资源综合利用设备等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0]50号）； 3、《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三代核电机组等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暂行规定有关清单的通知》（财关税[2011]45号）。 　　附件：1.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2年修订） 2.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清单（2012年修订） 3.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2年修订） 4.重大技术装备企业享受进口税收政策落实情况报告及其要求 财政部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二〇一二年三月七日  附件1~3：<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3/P020120312521597633422.pdf>附件4：（略） |